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구조

이 승 우*

차 례

- I. 시작하며
- II. 특별환경위험
- III. 위험책임범위
- IV. 환경위험의 분배구조
- V. 마치며

I. 시작하며

환경위험책임은 그 내용의 독자성과 그 귀책구조에 따라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전통적 위험책임의 대상은 시설, 조업수단, 에너지원 등이다. 손해위험은 자동차 사고나 가스 누출과 폭발로 발생된다. 이러한 손해위험의 특징은 대형사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이 해당시설로부터 환경 속으로 유출되어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켜 단기간에 법익을 침해시킬 수 있다.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환경침해의 책임은 위험책임일반에 따른다.¹⁾ 대부분 환경위험은 계획에 따른 조업으로 소규모, 계속적 환경침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1) 橋本佳幸, 責任法の多元的 構造-不作爲不法行爲危險責任めぐって-, 東京: 有斐閣, 2006, 191頁 以下,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폭발, 화재사고는 화학물질의 방출에 의한 침해작용과 폭발, 연소에 의한 침해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에 의한다. 여기에는 정상조업에 의한 간접적 침해와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가 있다. 정상조업²⁾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정상조업에 의해 소규모로 환경침해가 계속되어³⁾, 장시간 다른 환경침해와 함께 법익을 침해하는 유형이다. 전형적 침해구조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소량, 계속적 배출로 배출물질의 장기 축적, 집중에 의한 다른 배출물질과 혼재되어 법익을 침해한다. 예를 들면 공장의 조업으로 발생하는 매연, 폐수가 조업계획에 의해 환경 중에 소량으로 계속 배출되어 점증적, 집합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반복살포 등 환경 속으로 방출된 화학물질이 시설에 의해 소량으로 계속 방출되어 점증적, 집합적 침해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⁴⁾ 정상조업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위험책임의 전통적 규율대상인 손해위험과 대비된다. 조업장해⁵⁾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조업상 작은 장해에 의해 소규모 환경부하⁶⁾가 계속적으로 장시간에

-
- 2) 橋本佳幸, 前掲書, 202頁.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계획에 의한 조업과정과 조업의 적법성이 요구된다. 조업의 적법성이 입증되면 일정 책임이 경감된다. 예를 들면 환경책임법은 조업의무가 준수되어 조업의 장해가 없는 경우를 「규정에 의한 조업」이라하며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하고 물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있다.
 - 3) 정상조업에 의한 환경부하는 환경법상의 규제를 통해서 사실상 일정 정도 제한되나, 조업을 위해 일정기간 계속된다.
 - 4) Uwe Diederichsen,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bau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Referat), 56. DJT, Bd. II, 1986, S. L93 f., L105 f.; ders., Stand und Entwicklungstendenzen des Umwelthaftungsrechts-Gefährdungshaftung und Umweltschutz-, UTR 1988, 197 f., 203; ders., Die Beurteilung der Regierungsvorschläge aus rechtswissenschaftlicher Sicht, Bitburger Gespräche Jahrbuch 1989, S. 60 ff.; ders., BR-Deutschland: Industriegefährdung durch Umweltgefährdungshaftung ?, PHI 1990, 83 ff., 92; ders., Die Haftung für Umweltschäden in Deutschland, PHI 1992, 163 ff.; Peter Marburg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Gutachten), 56. DJT, Bd. I, 1986, S. C125; ders., Schadenszurechnung und Schadensverteilung, Karlsruher Forum 1990, 12; ders., AcP 192, 20 ff.
 - 5) Reh binder, NuR 1989, 154 f. 조업장해는 큰 환경부하를 수반하는 대형사고와 대비해서 작은 환경부하 만 수반하는 작은 조업장해의 의미로 이용된다.
 - 6) 소규모의 조업상 장해는 발견이 곤란하므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계속성을 흠결한 단발적 조업장해는 위험성이 낮아서 위험책임에 따라 규율할 필요가 없다.

걸쳐 다른 환경부하와 함께 법익을 침해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환경위험책임의 기본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환경침해가 손해로서 귀책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귀책구조에 의해 환경위험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아본다.

II. 특별환경위험

환경위험책임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그 기반이 되는 특별환경위험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유형별 특별환경위험

(1) 일반 특별환경위험

위험책임의 전통적 규율대상인 유체적 위험원에 의한 손해위험은 조업상 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로부터 발생한다. 한편 방지할 수 없는 특별위험은 시설, 조업수단, 에너지원의 조업과정에서 시설의 불완전성(엔진 회전수의 과도한 상승과 브레이크 고장), 외부원인(노면동결에 의한 미끄럼과 노상 이물질에 의한 펑크) 등에 의한 폭주, 진로일탈로 직접적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설과 물건의 조업, 보유과정에 있어서 기술성, 복잡성(엔진브레이크의 복잡한 구조) 내지 시설, 물건의 작용(고속주행)⁷⁾에 대해서 각종 안전조치(자동차의 보수, 조정과 정비와 운전주행상의 주의)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⁸⁾이 있는 기술적 시설, 조업수단, 에너지원의 조업으로 직접적 침해가 발생하

7) 시설의 기술성, 복잡성은 시설의 내부동작에 대한 지배제어(시설의 고장, 기능저하의 발생저지)를 곤란하게 한다.

8) 위험책임의 규율과제인 특별위험은 특히 시설, 물건에 있어서 기술성, 복잡성과 그 강도가 사실상 그 기반을 이룬다. 위험책임이 전통적으로 시설위험책임, 물건위험책임이 되고 유체적 위험원에 있어서 특별위험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게 되나 법적 보호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유체적 위험원의 개별 구체적인 특별 위험은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보증책임인 위험책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2)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은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되어 직접 침해되는 경우이다. 이 침해구조의 위험성을 보면 상당량의 오염 물질이 있는 시설(저장탱크에 의한 액화가스, 인화성 물질의 저장 등)의 기능부전, 외부요인의 개입(냉각장치의 고장에 의한 급격한 기화와 정전기, 충격파의 발생) 등에 의해 일정한 빈도로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되어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하게(발화, 인화 폭발에 의한 물질의 다량유출) 된다. 시설의 오염물질은 그 기술성, 복잡성(냉각장치의 복잡한 구조) 내지 그 강도(고압성, 인화성)로 인해 각종 안전조치(탱크의 보수정비와 조작상의 주의)의 부재와 시설의 불완전성, 외부요인의 개입을 유발하여 다량 유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로 인한 직접적 침해위험은 방지하기 쉽지 않다.

(3) 정상조업, 조업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

정상조업, 조업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은 특별위험으로 보고 독자적 내용으로 파악해야 한다. 오염물질이 소량으로 계속 방출되어 장기적으로 축적·집중되거나 다른 오염원의 방출물질과 혼재되어 법익이 침해되는 특유한 침해구조는 특별환경위험의 내용에 반영된다. 우선 고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소량으로 계속 방출되어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하면(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 오염물질의 방출로 인한 장기적인 축적, 집중 혹은 다른 오염원의 방출물질과의 혼재되는 법익침해가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방출되어 잔류되거나 축적되어 환경매체나 인체를 점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또 오염물질의 방출로 인해 환경매체에 의해 장거리 운반되면서 다수의 오염원으로부터 방출물질과 집적, 복합되어 집합적으

로 환경을 침해한다.

다음으로 시설로부터 소량으로 계속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방출물질의 장기적 축적, 집중 또는 다른 오염원의 방출물질과 혼합되어 법익을 침해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방출은 방지하기 어렵다. 방출물질에 의한 점증적, 집합적 침해는 그 방출시점의 사전예측이 곤란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소량, 계속방출은 사전조사를 지연시키고 예측을 어렵게 하여 법익을 침해한다.

방출물질에 의한 점증적, 집합적 침해에 관한 사전예측은 어렵고, 방출물질의 유해성 소량, 장기적 방출에 의한 만성적 영향 및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된 복합적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시작되기도 한다. 새로운 개발제조방법을 채택한 공장시설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⁹⁾과 신개발제품인 화학물질 등 신종물질에 있어서 만성적, 복합적 작용의 종류가 다양하고¹⁰⁾ 복수물질의 조합도 무수하게 존재함으로써 사전조사의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신종물질의 소량, 계속방출은 그 물질의 점증적, 집합적 침해작용을 통해 그 침해를 예측할 수 있다(장래위험). 또한 방출물질에 의한 점증적 침해는 생물농축, 농작물에 의한 흡수고정, 대기오염물질의 토양축적 등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친다. 이 침해과정에는 환경매체에 의한 운반작용에 다른 오염원의 방출이 관여할 수 있다. 이들의 침해작용을 방지할 환경매체에 의한 확산, 희석작용과 정화작용(물질의 분해, 흡수작용)도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한다. 한편 사전예측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침해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예측의 불확실성).

시설에 의한 오염물질의 방출은 방출물질의 장기적 축적, 집중 또는 다른 오염물질과의 혼합으로 고도의 위험성을 갖는다(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 이러한 점증적, 집합적 침해과정은 방출물질에 관한 장래위험과 다수 인자의 관여로 예측이 불확실하여 그 위험을 제한하기 쉽지 않다.

9)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에는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의 유형에 준해서- 오염물질의 소량, 계속유출이라는 예정 외 조업경과와의 관련해서 제어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

10) 물질의 만성적, 복합적 작용은 인체의 생식저하와 내분비혼란을 야기한다.

2. 사전예측의 한계로서 특별위험한계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위험에 있어서 특별위험한계는 위험책임일반의 특별위험과 다르므로 위험책임 고유의 실제적, 이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독일학자는 독일법상 장기손해(집적손해, 점증손해) 및 개발위험(위험물의 장래 유해성) 문제에 대한 정상조업의 환경위험책임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¹¹⁾ 그러므로 점증적, 집합적 침해의 위험 및 사전예측의 한계로서 특별환경위험에 관해 위험책임의 검증이 요청된다. 우선 사전예측의 한계로서 특별환경위험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개발위험의 항변

환경위험의 사전예측의 한계는 지금까지 제조물의 개발위험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¹²⁾은 제조물 인도시 과학기술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인지여부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개발위험의 항변). 즉 제조물의 결함을 예측할 수 없다면 제조물책임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의 유형에 있어서 사전예측의 한계로서 특별환경위험에 환경위험책임이 결합된 때 조업, 방출시 알 수 없었던 만성적, 복합적 작용에 의한 오염물질의 소량, 계속방출이 예측의 범위 외 점증적, 집합적 침해과정이 있는 장래위험에까지 위험책임이 미치지 된다. 방출물질의 장래 유해성에 대한 환경위험책임과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개발위험의 항변과의 사이에 체계적 정합성이 문제된다.

이 체계적 정합성에서 환경위험책임은 개발위험에까지 미칠 수 없다.¹³⁾ 더불

11) Uwe Diederichsen, a. a. O., S. L93 f., L105 f.

12) 독일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법 제84조 제3항과 유전자공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의약품, 유전자조작생물의 개발위험에 대해서 제조업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13) Uwe Diederichsen, BR-Deutschland: Industriegefährdung durch Umweltgefährdungshaftung?, PHI 1990, 92.

어 환경위험책임과 제조물책임 간에 규율대상의 연속성, 대응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기계설비에 의한 화학비료의 반복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정상조업으로 환경 속으로 배출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이 환경위험책임과 교착된다.¹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과정에서 연소생성물과 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매연과 폐액으로 방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은 제조물과 대응관계에 있게 된다.¹⁵⁾ 이러한 경우 방출물질의 장래 유해성에 의한 환경손해는 환경위험책임으로 귀책되지만, 독일환경책임법은 개발위험에 관해 시설보유자를 면책시키고 있다.¹⁶⁾

(2) 제조물책임과 개발위험 항변의 정합성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개발위험의 항변¹⁷⁾으로 첫째, 개발위험을 제조업자에게 귀책시키면 제품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¹⁸⁾ 개발위험은 제조업자가 제조물 인도시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단지 신제품개발과 관련해 개발위험에 대한 책임을 연구, 개발활동의 부담으로 하여 개발의욕을 감퇴시키고 그 유통을 지연시킨다.¹⁹⁾ 둘째, 설계와 다른 제조물의 제조상의 결함 등과 비교하여 손해위험으로서 안정성, 고도성의 부족으로 인한

14) Vgl. Günter Hager, Umwelthaftung und Produkthaftung, JZ 1990, 397; Uwe Diederichsen, Die Haftung für Umweltschäden in Deutschland, PHI 1992, 165 f.

15) Vgl. BGH NJW 1976, 46 f.

16) 橋本佳幸, 前掲書, 195頁 以下.

17) Vgl. Ernst von Caemmerer, Produkts Liability, in: Privatum Gentium, Festschrift für Max Rheinstein, Bd. II, 1969, S. 666 ff.; 好美清光, 「製造物責任立法への提案」, NBL 458号, 1990, 56頁-57頁.

18) Beschlußempfehlung und Bericht des Rechtsausschlusses, BT-Drucks 11/5520 (1989), S. 13;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逐條解說 製造物責任法」, 商事法務研究會, 1994, 108頁.

19) 瀨川信久, 「消費社會の構造と製造物責任法」, 岩村正彦 外編, 「現代の法13 消費生活と法」, 岩波書店, 1997, 208頁-209頁.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유형인 제조상 결함은 제조과정에서 어떤 이상으로 인해 설계, 모양이 적합하지 않는 제조물이 유통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제조물책임은 제조과정의 완전성(기계설비의 완전기능)에 대한 보증책임으로서 제조과정상 부담이 된다.

특별위험이 문제된다. 신제품이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²⁰⁾

장래위험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은 개발위험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비해서 제품, 제조방법의 연구개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다. 특히 (a) 신개발 화학물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서 환경 속으로 방출되는 경우 그 사용자가 책임주체가 된다.²¹⁾ 따라서 이 신제품의 연구, 개발활동의 부담은 간접적인 것이다. 또 (b)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운영되는 공장시설로부터 배기가스, 폐액 등 신종의 부생물질이 환경속으로 배출된 경우 직접적으로 조업자에게 부생물질의 폐기처리방법을 관리하게 하여 환경위험책임을 지게 한다.

제조물의 개발위험과 비교할 때 방출물질의 장래 만성적, 복합적 작용에 의해 법익침해가 야기되는 환경위험은 고도의 위험에 해당된다. 특히 (b)의 경우 공장시설의 조업과정상 부가되는 생산물에 의해 생성되는 부생물질은 정상적인 생산물인 제조물과 달리 조업자에 의해서 그 내용이 설계되거나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조방법에 의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을 초과하는 부생물

20) 升田純, 「詳解製造物責任法」, 商事法研究會, 1997, 893頁, 902頁. 개발위험의 항변은 최첨단 과학기술제품에 한정되고 자동차, 기계, 설비, 세제 등 대표적인 제품 등 개발위험의 항변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드물다.; 加藤雅信, 「製造物責任法總覽」, 商事法研究會, 1994, 50頁, 209頁. 제조물 중에서도 의약품은 개발위험의 피해(미지의 부작용)가 많은 품목이다. 인간의 신체조직 및 생체 메카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여 이들에 관한 의학적 지식은 발달도상에 있으므로 어떤 의약품이 장기적으로 인간의 어떤 신체조직에 어떤 부작용을 수반하는지는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의약품의 개발위험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의약품은 국민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신약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橋本佳幸, 前掲書, 142頁 以下. 의약품의 투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이루어지므로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신체피해는 환자의 증상이 포함된 위험실현으로 환자의 책임부담(자기부담)이 정당화되고 있다.

21) 橋本佳幸, 前掲書, 130頁 以下. 위험책임의 경우 제조물책임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험원에 대한 일반적 사실상의 지배여부가 책임주체를 정하는 결정기준이 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가 인도단계에서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상실하는 경우 제조물사용자가 책임주체가 된다. 결과적으로 화학물질의 사용자는 화학물질의 미지의 유해성에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의 추급을 저해하는가 동시에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환경위험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조자의 구상 불허).

질이 생성되면서 알 수 없는 유해성을 가질 수 있다. 또 (a)의 경우에도 화학물질의 성질 속에 만성적 영향과 다른 화학물질과의 복합적 영향에 관해서 지식의 발달로 장래 유해성 있는 환경위험은 제조물의 장래 위험일반에 비해서 그 손해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물질방출의 장래위험은 개발위험의 항변의 저해 및 손해위험의 고도성에 비추어 제조물의 개발위험과는 다른 위험책임에 따라야 한다.

3.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의 특별환경위험

(1) 특별책임제한구조의 필요성

특별위험은 일반적으로 직접적 침해위험만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익이 침해된다. 그러나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으로서 특별환경위험은 위험원만으로 부족하고 다수의 위험원의 경합, 관여가 필요하다. 어떤 시설에 의한 오염물질의 소량, 지속적인 방출은 다수 오염원의 방출물질의 집적, 복합으로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으로서 특별환경위험에 기한 환경위험책임은 결과적으로 위험책임 일반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 예를 들면 사고손해와 대비되는 장기손해(집적손해, 점증손해)는 각각 환경위험책임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에 있어서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은 위험책임 일반과는 다른 특별제한구조를 갖고 환경위험책임에 의한 규율이 정당화 되는지 의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정상조업시 복수오염원의 책임제한이 도입되었다. 독일법상 복수 책임원인의 경합, 관여시 독일 민법 제840조, 제830조 제1항에 의해 공동행위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²²⁾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으로서 특별환경위험에 기한 환경위험책임에 대해 위험책임, 배상책임일반에 있어서 귀책

22) 선박충돌-大判 明治 44年 11月 6日 民錄 17輯 627頁; 大判 大正 2年 6月 28日 民錄 19輯 560頁;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경합-最判 平成 13年 3月 13日 民集 55卷 2号 328頁. 일본에서는 복수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일본민법 제719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연대책임을 진다.

원인의 경합으로 오염원에 과도한 책임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오염물질의 소량, 계속 방출에 따른 상호집적, 복합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은 단독 내지는 소수의 시설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고 다수 시설의 방출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³⁾

(2) 복수오염원에 대한 분할책임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으로서 특별환경위험은 다수시설의 방출물질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개별시설의 방출물질에 의한 환경위험책임이 결합된 것이다. 개별시설은 현재 발생하는 환경손해에 대해서 당해 시설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의 환경위험정도²⁴⁾에 따라 분할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²⁵⁾ 부분적 특별책임제한 이론에 의하면 다수 시설의 오염물질의 소량, 계속방출이 각 시설로부터 방출물질의 상호집적, 복합에 의해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인과관계가 소송상 인정된다.²⁶⁾ 점증적, 집합적 침해에 의하면 다수의 시설로부터 방출물질은 혼합되어 침해대상에 작용하고, 다른 시설로부터 현실적으로 시간, 장소, 태양에 따라 발생한다.²⁷⁾ 따라서 복수오염원의 분할책임은 각 오염원의 방출물질과 전체

23) 伊藤進, 「公害の私法的救済と共同不法行為理論-複數加害者の場合の理論構成のための若干の考察, 不法行為法の現代的課題, 總合勞動研究所, 1980, 187頁. 복수원인자의 행위가 단독으로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원인의 집합적 단독불법행위가 성립한다.; 浦川道太郎, 「共同不法行為による損害の賠償と差止, 民法學6 不法行為の重要問題, 有斐閣, 1975, 168頁-169頁. 다수의 기업에 의해서 객관적 위험상태가 유발되면(집합, 집적의 위험) 이들 기업은 과실, 위법성에 의해 발생한 위험에 귀책된다.

24) 구체적으로 오염물질의 유해성의 내용, 정도 및 그 도달양이 문제된다.

25) 伊藤進, 前掲書, 1918頁. 집합적 단독불법행위에서 각 원인자의 책임은 분할된다. 어떤 오염원이 단독으로 복수오염원과 특별상호관계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콤비나트 구성기업), 불특정 다수의 미소오염원이 관여하는 경우(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가스) 개별적 검토를 요한다.

26) 幾代通, 「不法行為」, 筑摩書房, 1977, 225頁; 前田達明, 「民法 VI 2(不法行為)」, 青林書院, 1980, 194頁; 塚原朋一, 「共同不法行為に關する諸問題-複數關與者の賠償責任を主に」, 「新·實務民事訴訟講座 4 不法行為訴訟 I」, 日本評論社, 1982, 240頁; 四宮和夫, 「不法行為」, 青林書院, 1983, 420頁. 복수오염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각 오염원과 전체손해와의 인과관계존재를 전제로 한다.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와 다른 오염원에 의한 방출물질의 경합으로 인해 각 오염원의 책임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게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원인경합으로 인한 책임범위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여²⁸⁾ 피해자과실의 경합으로 과실상계되는 손해분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실상계 내지 그 유추적용은 판례상 피해자측의 경합원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설은 제3자의 귀책원인에 의한 복수불법행위의 경합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연대책임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수정하여 제한책임론에 따른 경합불법행위에 의한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복수불법행위의 단순 경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복수오염원의 경합에 의한 분할책임은 제한책임의 내용면에서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으로써 환경위험책임의 특칙이 된다.

III. 위험책임범위

환경위험책임의 장래위험 및 책임범위의 제한, 즉 어느 정도의 환경침해가 손해로서 귀책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침해작용에 의한 환경손해

독일에서는 소음, 진동 등 방출물질과 그 이외의 임피시온, 혹은 유사시설로부

27) 牛山積, 「共同不法行爲再論-共同不法行爲者の全部責任の基礎」, 「公害法の課題と理論」, 日本評論社, 1987, 190頁;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1978, 133頁. 가해원인과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특정사실이 특정결과발생을 초래한 관계」로써 당해 가해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증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발생은 그 내용 및 발생시점, 장소, 태양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수의 오염원으로부터 방출물질에 의해 환경손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각 오염원의 방출물질과 전체손해와의 사이에 조건관계가 성립하는 한 각 오염원에 대해서 전체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28) 川井健, 「共同不法行爲の成立の範圍の限定-全部連帶か一部連帶か」, 「現代不法行爲法研究の課題」, 日本評論社, 1978, 228頁; 前田達明, 「不法行爲歸責論」, 創文社, 1978, 314頁.

터 발생하는 기타 침해작용이 문제된다. 독일환경책임법은 위험책임내용을 침해작용의 종류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작용이라는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제로 물질방출 이외의 침해작용에 대해서도 환경위험책임에 의한 포괄적 규율이 타당한지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의 유형과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의 유형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1)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으로는 화학물질의 저장, 수송, 제조시설 등의 폭발, 화재사고에 의한 파편의 비산, 충격파, 연소 등에 의해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 등이 있다. 이 경우 환경위험책임의 범위는 침해작용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시설에 의한 상당량의 오염물질의 보유과정에서 계획 이외 조업으로 인한 폭발로 파편의 비산, 충격파, 연소 등의 침해작용에 의해서 법익이 침해되거나 고도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정 이외 조업과정은 시설의 기술성, 복잡성 내지 각종 물질의 작용에 의해 각종 안전 조치를 못하게 됨으로써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방출과 사고, 시설에 의해 환경오염과의 관련성을 결함 있는 환경오염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위험책임에 의한 환경책임이 의문시 된다. 독일의 위험책임론에 의해 위험책임의 일반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여 시설, 물질의 폭발, 화재사고에 의한 파편의 비산, 연소에 의한 침해작용은 일반시설위험책임으로 충분하다.

(2)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공장시설의 가동이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됨에 따라 인근주민의 생활안정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음, 진동의 침해작용을 물질방출의 가해작용과 비교하면, 양자간에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 및 사전예측의 한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에 의하면 방출물질이 장시간에 걸쳐서 주변환경이나 인체 내에 축적, 농축되는 한편, 소음, 진동은 잔류하거나 축

적되지 않아서 점증적 침해작용의 위험이 적다. 또 방출물질은 환경매체에 의한 운반작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반면, 소음, 진동의 침해작용은 확산정도가 제한된다. 사전예측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방출물질에 의한 점증적, 집합적 침해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다른 인자에 영향을 주는 데 반해 소음, 진동에 의한 침해작용은 환경매체에 의해 직선적으로 전파되어 다른 오염원이나 환경요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의 유형에 있어서 특별환경위험은 오염물질의 방출을 소음, 진동의 침해작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위험책임의 범위는 생활방해의 전반에 걸쳐 확대되지 않고 오염물질방출이라는 전형적 침해작용에 의한 환경손해로 제한된다.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면 제어가능한 통상의 위험으로서 과실책임에 의한 손해로 규율될 수 있다.²⁹⁾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환경위험책임의 범위는 오염물질의 방출이라는 전형적 침해작용에 제한된다.

2. 시설 이외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손해

환경위험책임 및 침해작용의 범위가 오염물질의 방출로 제한된다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이외의 시설에 의한 환경손해는 환경위험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환경책임법은 환경위험책임은 오로지 시설과 관련하여 일원적으로 구성하면서 시설 이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환경위험책임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시설에 관련된 환경위험책임과 오염물질에 관련된 환경위험책임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³⁰⁾

29) 小林正明, 「工場騒音と不法行為責任」, 上口和男 編, 「裁判實務大系16 不法行為訴訟(2)」, 青林書院, 1987, 30頁. 소음, 진동피해에 관한 불법행위 소송의 쟁점은 과실의 유무가 아니라 위법성과 수인한도이다.

30) Gerd Landsberg/Wilhelm Li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3 UmweltHG, Rn. 13.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의 시설책임에서 말하는 「시설」을 동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장 및 저장소 등 토지에 고정된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가 「저장소」를 명시하는 것은 토지 위에 단순히 퇴적된 기술적 조업과정을 흡결하는 경우에

(1)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에 있어서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방출에 의한 환경손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상당량의 강한 화학물질이 시설이 아니라 단순한 용기(인화성 물질과 대량의 화학약품의 용기에 의한 저장 등)³¹⁾에 의하거나, 화재나 파괴에 의해 외부로 다량 유출되어 환경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업상 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구조를 취하므로 위험책임일반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특별환경위험이 존재해 위험책임에 따라 규율된다. 즉, 화재나 차량의 충돌로 인해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됨으로써 직접적으로 환경을 침해한다. 또 이와 같은 인화성, 대량성 등 물질적 강도로 인해 각종 안전조치를 지연시켜 위험을 유발하게 한다.

(2) 정상조업·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

한편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2가지 측면에서 문제된다. 즉, 기계설비가 아닌 경작지, 골프장 등에 반복적으로 살포된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인근 하천이나 호수에 점증적, 집합적으로 침전되는 경우(정상조업에 의한 간접적 침해) 및 토지에 퇴적된 폐기물로부터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서서히 침전되어 점증적, 집합적 침해에 이르는 경우(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이다.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의 경우는 위험책임의 전통적 대상에 대한 침해구조의 독자성으로 인해 위험책임 일반에 의할 수 없다.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 및 사전예측 한계로서 특별환경위험은 오염물질의 시설 이외 소량, 계속 방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³²⁾

도 「시설」로 본다는 취지이다. 이 때 환경책임법에서 말하는 「시설」에는 시설위험책임일반이 예정된 시설과 달리 물질이 보관 퇴적된 토지도 포함된다. 이 「시설」 책임에는 단순한 용기에 의한 화학물질의 보유와 폐기물의 야적도 포함된다.

31) 橋本佳幸, 前掲書, 226頁. 단순한 용기에 의한 물질보유는 시설에 의한 경우보다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물질이 일정한 위험정도 이상이면 폭발, 발화위험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시설에 저장해야 된다.

IV. 환경위험의 분배구조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구조에 의해 그 규율대상인 특별환경위험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알아본다. 즉, 특별환경위험이 어떤 유체적 위험원에 의해서 책임주체에게 분배되는지 문제된다.

1. 특별환경위험의 위험원

특별환경위험의 환경손해는 오염물질이 시설로부터 환경 속으로 방출되거나 시설 외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방출된 경우를 포함한다. 우선 대형사고에 의해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시설의 결함과 외부원인으로 인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시켜 직접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오염물질은 시설의 기술성, 복잡성 내지 물질의 강도에 의해 각종 안전조치가 지연됨으로 인해 위험이 상존한다. 다음으로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로 인해 시설 내외부로부터 소량으로 계속 방출되어 상당량에 이르게 된 오염물질은 환경, 인체 속에 축적되거나 다른 오염원의 방출물질과 혼합되어 점증적, 집합적 침해에 이르게 된다. 한편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오염물질은 방출물질에 관한 장래위험 및 다수 인자의 관여로 인해 환경침해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거나 손해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상당량의 오염물질에 존재한다.³²⁾

32) Diederichsen, Die Beurteilung der Regierungsvorschläge aus rechtswissenschaftlicher Sicht, Bitburger Gespräche Jahrbuch, 1989, S. 57; Hager, JYZ 1990, 408; Knebel, Überlegungen zu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UTR 1988, 277; Marburger, Umwelthaftung im Agrarbereich, AgrarR 1990, Beilage III S. 14 f.

33) Bericht des Rechtsausschusses, BT-Drucks 11/7881, S. 29; Diederichsen, Bitburger Gespräche 1985, S. 57. 오염물질의 방출에 시설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행위위험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설과의 공간적 관련성을 흠결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은 행위위험책임으로 구성될 수 있다. 농약, 화학비료의 살포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은 행위위험책임의 일례로서 비판된다. 이러한 견해는 오염물질의 방출에 의한 환경손해

2. 유형에 따른 위험분배구조

특별환경위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책임주체에게 분배되는지 문제된다.

(1) 위험책임일반의 위험분배

독일법상 위험책임구성요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설의 조업 내지 물건의 점유와 결합된 특별위험에 대해서 시설의 보유자, 물건의 점유자가 보증책임을 진다. 즉, 유체적 위험원의 보유자는 당해 위험원에 존재하는 특별위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위험은 유체적 위험원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험원보유자에게 귀속된다. 특별위험이 있는 폭발물, 인화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손해결과에 대해 보증책임을 진다.

(2)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

오염물질에 의한 특별환경위험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책임주체에게 분배되는지 문제이다.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은 조업상 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라는 가해구조 속에서 위험책임일반의 귀책구조를 이룬다. 즉,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시 오염물질의 보유에 결합된 특별환경위험에 대해서 오염물질의 보유자가 환경위험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오염물질에 존재하는 특별환경위험은 오염물질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기해서 오염물질의 보유자에게 분배된다. 오염물질의 보유자는 특별환경위험이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보증책임의 주체가 된다.

(3) 정상조업, 조업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

정상조업, 조업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은 위험책임의 일반구조에 의할 수 없다.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 및 사전예측의 한계로서 환경위험은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오염물질에 존재한다. 정상조업으로서 소량으로 계속 배출된 오염물질

에 대해서 오염물질이라는 유체적 위험원에 관계된 위험과악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 예측을 벗어나 점증적, 집합적 침해과정을 거치면 조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의 폐기처리의 위험이 존재한다.³⁴⁾ 이 폐기처리위험에서 조업자의 책임영역이 폐기처리과정의 오염물질에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의 환경위험책임은 오염물질이 소량으로 계속 방출시 오염물질의 보유자나 방출자를 책임주체로 하게 한다. 오염물질은 방출시점에 보유자나 방출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으므로 오염물질의 특별 환경위험도 방출시에 보유자나 방출자에게 보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경우, 보유자나 방출자는 오염물질의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므로 보증책임이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환경위험책임의 책임주체에 따른 귀책구조를 정리하면 우선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유형에서 오염물질의 보유자는 오염물질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보증책임의 책임주체가 된다. 다음으로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에서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오염물질에 존재하는 특별 환경위험에 관해서 방출시까지의 오염물질 보유자가 보증책임의 주체가 된다.³⁵⁾

(4) 방출시 위험분배

보유자와 방출자의 보증책임이 오염물질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상실 후까지 연장된다면 위험책임의 일반귀책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 위험책임의 전통적 구성요건에 따른 사례

독일의 전통적 위험책임 구성요건 및 위험책임의 일반구성요건은 유체적 위험

34) 환경 속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정화작용으로 희석되거나 흡수 고정, 분해되어 오염물질에 의한 침해가 방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업자는 이것을 예측, 기대하고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환경 속으로 소량으로 계속 배출하는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기도 한다.

35) 환경오염물질 방출자가 오염물질을 방출한다 할지라도 환경위험책임의 행위주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부지 내에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을 장난으로 배수구에 유입시킨 경우 그 책임은 방출행위를 한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을 보유한 공장조업자에게 있다. 혹은 공장시설의 정상조업에 수반해서 오염물질이 계획적으로 배출된 경우, 배출시설을 조작한 종업원은 단순배출행위자이므로 책임주체가 아니다.

원의 사실상 지배자를 책임주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구성요건은 적지 않게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보유자에게 위험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 구성요건으로부터 다음 2가지의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소유자의 양해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자는 독일도로교통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³⁶⁾ 자동차의 운행이 소유자의 과책에 의한 때는 운행자와 공동연대책임을 진다. 독일원자력법 제26조 제3항에 의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자는 점유자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유체적 위험원의 소유자는 지배 전후 태양에 따라 사실상 지배의 상실 후에도 책임이 있다.³⁷⁾ 이처럼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자에 의한 운행이나 피용자에 의한 무단운전³⁸⁾으로 인해 자동차의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유자로서 위험책임을 부담한다.³⁹⁾ 또 독일원자력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방사능 물질의 점유자는 방기, 분실, 도난으로 인해 점유를 상실한 때에도 위험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체적 위험원에 기해 종전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새롭게 책임주체로서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는 사실상 지배자⁴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⁴¹⁾ 이들 구성요건은 종전 소유자의 책임을 사실상 지배의 상실 후까지 연장시키고 있다.⁴²⁾ 그리고 지배의 태양에 따라 사실

36) Hein Kötz, Gefährdungshaftung, in: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I, 1981, S. 1809 f., 1832.

37) Jürgen Heß, Die Bestimmung des Ersatzpflichtigen in der Gefährdungshaftung, 1978, S. 155, 170, 189. 위험책임을 기준으로써 위험책임에 있어서 배상의무자는 1) 위험물, 시설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2) 물을 파기해서 조업을 정지한 경우, 조업위험에 의해 귀책된다.

38)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볼 때, 무단운전은 운행이 준비된 자동차가 피용자에 의해서 보유자에게 예정된 이외로 운행되는 것이다.

39) 川井健 外編, 「注解 交通損害賠償法 第①卷」, 青林書院, 1997, 44頁-47頁, 59頁-60頁. 피용자의 무단운전에 관해 보유자(사용자)의 운행공용자 책임을 긍정한 최고재판소판례: 最判 昭和 39年 2月 11日 民集 18卷 2号 312頁; 最判 昭和 42年 11月 30日 民集 21卷 9号 2512頁; 最判 昭和 44年 9月 12日 民集 23卷 9号 1654頁.

40) 충분한 자력을 갖고 배상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갖고 위험통제가 기대되는 사실상 지배자를 고려할 수 있다.

41) 무단사용, 도난의 경우 새로운 무단점유자가 유체적 위험원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이들이 현실적으로 책임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 지배의 상실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책임영역을 확대해 책임주체를 확보하는 것은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에도 적용된다. 이 유형에서 방출시점으로부터 소유자의 보증책임을 사실상 지배의 상실 후까지 연장하여 오염물질의 보유자나 방출자를 환경위험책임의 책임주체가 되게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은 앞에서 거론한 구성요건과 유사한 위험책임의 연장⁴³⁾으로서 위험책임의 전통적 구성요건과 관련될 수 있다.

(나) 위험책임의 기본구조와 연속성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의 유형에서 오염물질의 보유자나 방출자의 보증책임을 오염물질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실 후 까지 연장되는 귀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귀책구조는 위험책임의 일반원칙 귀책구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정상조업의 경우에 오염물질의 보유자나 방출자는 계획대로 조업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소량으로 계속 배출하므로 오염물질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 지배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므로 이 오염물질을 사실상 지배한 보유자나 방출자가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면책될 수 없다. 현재 사실상 지배에 기한 보유자, 방출자의 책임은 사실상 지배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오염물질에까지 확장된다. 또 조업장해의 경우 오염물질을 조업상 소량으로 계속방출하게 되어 현재의 사실상 지배를 불가피하게 상실하게 된다.⁴⁴⁾ 이와

42) Jürgen Heß, a. a. O., S. 156 f., 186 f., 189 f.

43)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방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이라는 유체적 위험원이 환경 속으로 확산됨으로써 공간적 한정성(유체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에 대하여 환경위험책임은 보유자의 책임영역을 유체적 위험원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상실에 까지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체적 위험원이 유체성을 상실한 이후까지 위험책임을 존속시킬 수 있다.

44) 오염물질의 보유과정에 있어서 조업상 적은 장해에 의한 소량, 계속방출은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와 그 규모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에 대해서 분석, 추출되는 정형성, 불가피성은 조업장해에 의한 소량, 계속유출과 같다.

같은 사실상 지배 상실 위험은 오염물질 보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위험책임일반에 있어서 위험분배에 준해서 오염물질의 보유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보유자나 방출자에 대한 위험분배는 조업장애에 의해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오염물질에까지 확장된다.

V. 마치며

환경위험책임법상 특별위험은 과실책임 하에서 유체적 위험원에 의한 제어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이다. 환경위험에 있어서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와 정상조업, 조업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큰 차이가 없다.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는 조업계획에 따르지 않아서 큰 환경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장시설, 공급·수송시설, 제조·가공시설 등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폭발과 화재사고, 파괴사고, 이상반응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위험책임의 전통적 규율대상인 자동차사고, 가스관 폭발사고의 손해위험과 마찬가지로 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구조에 의해 특별환경위험이 될 수 있다. 이 특별환경위험으로 시설 또는 시설 이외 상당량의 오염물질에 의한 시설기능 불완전, 외래원인의 개입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다량 유출되어 직접적으로 환경을 침해한다.

오염물질의 방출 이외의 침해작용(폭발, 화재사고에 의한 파편의 비산, 충격파, 연소 등)에 의한 특별위험은 환경위험의 영역에 포함된다. 귀책구조에 의하면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에서 위험책임일반과 공통 위험분배구조로 오염물질의 보유자가 책임주체가 된다. 마찬가지로 물위험책임에 있어서 특별환경위험은 오염물질을 사실상 지배하는 보유자에게 분배된다.

다음으로 정상조업, 조업장애에 의한 간접적 침해유형으로써 계획적인 정상조업 또는 조업상의 작은 조업장애로서 소규모 환경부하가 계속되어 장시간에 걸쳐 다른 환경부하와 공동으로 법익을 침해한다. 정상조업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공

장시설의 조업으로 발생하는 매연, 폐수의 계획적 배출 이외 농약, 화학비료의 반복살포에 의해 발생하고,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는 화학물질시설로부터 소량으로 계속 유출되거나 매연, 폐수의 계획적 배출에 따른 과잉방출에 의한다. 계획적 조업경과 내지 조업상 작은 장해로 인한 점증적, 집합적 침해라는 침해구조에 있어서 위험책임의 전통적 규율대상(조업상 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과 크게 다르다.⁴⁵⁾ 즉, 오염물질에 존재하는 특별위험으로서 시설 내·외부에 존재하거나 발생하여 소량으로 계속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속으로 장기 집중, 혹은 다른 오염원으로부터의 방출물질과 혼합되어 점차적, 집합적 침해에 이르게 된다(점차적, 집합적 침해의 위험으로서 고도의 환경위험). 또 방출 후 오염물질에 의한 침해는 방출물질에 관한 미지의 위험 및 다수 인자의 관여에 대해 예측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것에 상응하여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로 인한 환경위험책임은 위험책임의 일반구조와 다른 위험책임유형으로서 독자적인 책임내용과 귀책구조를 갖는다.⁴⁶⁾ 점증적, 집합적 침해위험 및 사전예측의 한계로부터 우선 환경위험책임은 사전예측의 경우에 장래위험도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조업, 방출 당시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복수오염원이 경합, 관여하여 환경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책임은 분할된다.

한편 환경위험책임의 범위는 오염물질이 시설로부터 방출되는 경우와 시설 이외로부터 방출된 경우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⁴⁷⁾ 이처럼 특별환경위험은 오염물질 방출에 의한 침해과정의 특성(물질의 환경간류, 축적성 및 장거리도달성, 침해경로의 복잡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형적 침해작용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없다. 정상조업, 조업장해에 의해 오염물질이 환경 속으로 방출된 때, 오염물질의 보유자나 방출자의 보증책임은 오염물질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이후까지 미친다.

45) 환경위험의 고유의 사실적 특질과 독일의 반대견해에 의하면 이 유형에서는 오염물질의 존재, 전형적 침해작용의 한정성, 사고를 포함해서 집적 침해성이 모두 현실화한다.

46) 환경위험책임은 물위험책임과 달리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외부오염물질을 매개로 한다.

47) 환경위험책임은 시설 또는 시설 이외의 소량으로 계속 방출된 오염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참고문헌

- 橋本佳幸, 「責任法の多元的構造-不作爲不法行爲危険責任めぐって-」, 東京: 有斐閣, 2006.
- 好美清光, 「製造物責任立法への提案」, NBL 458号, 1990.
-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逐條解説 製造物責任法」, 商事法務研究會, 1994.
- 瀨川信久, 「消費社會の構造と製造物責任法」, 岩村正彦 外編, 「現代の法13 消費生活と法」, 岩波書店, 1997.
- 加藤雅信, 「製造物責任法總覽」, 商事法研究會, 1994.
- 升田純, 「詳解製造物責任法」, 商事法研究會, 1997.
- 伊藤進, 「公害の私法的救済と共同不法行爲理論」-「複數加害者の場合の理論構成のための若干の考察」, 不法行爲法の現代的課題, 總合勞動研究所, 1980.
- 浦川道太郎, 「共同不法行爲による損害の賠償と差止」, 「民法學6不法行爲の重要問題」有斐閣, 1975.
- 幾代通, 「不法行爲」, 筑摩書房, 1977.
- 前田達明, 「民法 VI 2(不法行爲)」, 青林書院, 1980.
- 塚原朋一, 「共同不法行爲に關する諸問題-複數關與者の賠償責任を主に」, 「新實務民事訴訟講座 4 不法行爲訴訟 I」, 日本評論社, 1982.
- 四宮和夫, 「不法行爲」, 青林書院, 1983.
- 牛山積, 「共同不法行爲再論-共同不法行爲者の全部責任の基礎」, 「公害法の課題と理論」, 日本評論社, 1987.
-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1978.
- 川井健, 「共同不法行爲の成立の範圍の限定-全部連帶か一部連帶か」, 「現代不法行爲法研究の課題」, 日本評論社, 1978.
- 小林正明, 「工場騒音と不法行爲責任」, 上口和男 編, 「裁判實務大系16 不法行爲訴訟(2)」, 青林書院, 1987.

- 前田達明, 「不法行爲歸責論」, 創文社, 1978.
- 川井健 外編, 「注解 交通損害賠償法 第①卷」, 青林書院, 1997.
- Diederichsen, Uwe: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bau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Referat), 56. DJT, Bd. II, 1986.
- _____ : Stand und Entwicklungstendenz des Umwelthaftungsrechts- Gefährdungshaftung und Umweltschutz-, UTR 1988.
- _____ : Die Beurteilung der Regierungsvorschläge aus rechtswissenschaftlicher Sicht, Bitburger Gespräche Jahrbuch 1989.
- _____ : BR-Deutschland: Industriegefährdung durch Umweltgefährdungshaftung?, PHI 1990.
- _____ : Die Haftung für Umweltschäden in Deutschland, PHI 1992.
- von Caemmerer, Ernst: Produkts Liability, in: Privatum Gentium, Festschrift für Max Rheinstein, Bd. II, 1969.
- Hager, Günter: Umwelthaftung und Produkthaftung, JZ 1990, 397.
- Heß, Jürgen: Die Bestimmung des Ersatzpflichtigen in der Gefährdungshaftung, 1978.
- Knebel, Jürgen: Überlegungen zu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UTR 1988, 277.
- Kötz, Hein: Gefährdungshaftung, in: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I, 1981.
- Marburger, Pet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Gutachten), 56. DJT, Bd. I, 1986.

_____ : Schadenszurechnung und Schadensverteilung, Karlsruher Forum 1990.

_____ : Grundsatzfragen des Haftungsrechts unter dem Einfluß der gesetzlichen Regelungen zur Produzenten- und zur Umwelthaftung, AcP 192, 18 f.

_____ : Umwelthaftung im Agrarbereich, AgraR 1990, Beilage III S. 14 f.

Gerd Landsberg/Wilhelm 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Zusammenfassung>

Verschuldensstruktur der Umweltgefährdungshaftung

Lee, Seung Woo

Die Gefährdungshaftung setzt weder Rechtswidrigkeit noch Verschulden voraus. Die Einführung von ihren Tatbeständen ist ein Mittel zur Schaffung von Risikoakzeptanz, dem im Umwelthaftungsrecht eine besondere Bedeutung zukommt. Das Umwelthaftungsgesetz normiert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Gefährdungshaftung für die Inhaber bestimmter umweltgefährdender Anlagen. Soweit ein Schaden durch langandauernde Einwirkungen nach und nach entstanden ist, soll die Gefährdungshaftung nur für den Schadensteil eintreten, der nach dem Inkrafttreten des Gesetzes hinzugekommen ist.

D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ist eine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An Notwendigkeit und Zweckmäßigkeit eines Ausbaus bestehen aber erhebliche Zweifel. Etwa im Fachplanungs-, Atom- und Immissionschutzrecht lässt sich der Individualschutz durch geringfügige Randkorrekturen verbessern, und auch im bürgerlichen Recht sind die Möglichkeiten einer umweltfreundlichen Interpretation der bestehenden Vorschriften noch nicht ausgeschöpft. Der spektakuläre, letztlich jedoch nur quantitative Ausbau des Rechts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der in zahlreichen Änderungsvorschlägen zum Ausdruck kommt, entfernt sich vom Individualschutz und dürfte im Ergebnis die Wirksamkeit des individuellen Rechtsschutzes eher verringern.

주 제 어 : 환경위험책임, 귀책구조, 환경부담, 환경손해, 개발위험

Keywords : Umweltgefährdungshaftung, Verschuldensstruktur, Umweltbelastungen, Umweltschäden, Entwicklungsgefährdung